의안번호	제 82 호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육미선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육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육미선, 박상돈, 박형용, 심기보, 이상욱, 최경천, 이상식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용어·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부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책무 규정 **(안 제5조)**
- 근로자 정신건강 유지 조치, 도 자살예방정책 협조 등

나. 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포함 사항 확대 **(안 제6조)**
-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 심리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등

다. 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이행상황 점검 및 시·군 별 시행계획 수립·이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안 제7조)**

라. 효율적 시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0조)**

마.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실시 **(안 제12조)**

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지원 **(안 제15조)**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안 제16조)**

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종사자의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 치유에 대한 지원 **(안 제17조)**

자. 자살유해정보의 유통 차단 및 조기발견을 통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안 제2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8 - 54 호

라. 협　　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마.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처한 다양한 심리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도민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연령 등 생애주기별 및 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자살예방센터 운영
10.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11.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2.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3.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4. 자살예방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전달체계를 구축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시·군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도지사는 시·군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군별 시행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5.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6.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8.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소방본부 및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심리부검) 도지사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연령·계층·자살동기 등에 대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예방 등 관련 연구 및 기획
3.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8.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9.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15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

2.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3.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
4.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 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 도 내 공공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3. 충청북도 소방본부
4.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5. 응급의료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도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이 높아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및 표창) ① 도지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자에게 표

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생 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2.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
3.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정보
4. 독극물 판매정보

5. 그 밖에 자살을 조장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舊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

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 · 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시 · 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국가(도) 자살예방 정책에 따른 사업지원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6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19년에 예정되는 사업의 추계 및 물가상승률(2%) 고려하여 산출,

나. 추계 결과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

다. 재원조달방안

<국·지방비 지원>

○ 600,000천원

<도비 지원>

○ 50,000천원

<도·시군비 지원>

○ 943,000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보건정책과장 김 용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국 비		300,000	306,000	312,120	318,362	324,730	1,561,212
도 비		426,540	435,071	443,772	452,648	461,701	2,219,731
시군비		866,460	883,789	901,465	919,494	937,884	4,509,093
세 출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00,000	612,000	624,240	636,725	649,459	3,122,424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지원		140,000	142,800	145,656	148,569	151,541	728,566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지원		720,000	734,400	749,088	764,070	779,351	3,746,909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30,000	30,600	31,212	31,836	32,473	156,121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구축		53,000	54,060	55,141	56,244	57,369	275,814
충청북도 자살예방 성과평가		50,000	51,000	52,020	53,060	54,122	260,202
재원 조달		1,593,000	1,624,860	1,657,357	1,690,504	1,724,314	8,290,036
의존 재원	소 계	726,540	741,071	755,892	771,010	786,430	3,780,943
	보조금	726,540	741,071	755,892	771,010	786,430	3,780,94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866,460	883,789	901,465	919,494	937,884	4,509,093
기 타 (민간자부담)							

[조례 원안]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2012-07-16 조례 제 3480호
(일부개정) 2016-10-28 조례 제 39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개정 2016. 10. 28>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충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8>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개정 2016. 10. 28>

② 도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6. 10. 28>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예방센터 운영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부지사, 보건복지국장,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2. 자살예방 전문 조사 ·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
4.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6.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

④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도지사는 도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교육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2016. 10. 28>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주민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